

##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b>제 2 조(적용범위)</b> 이 규정은 <u>기품원 및 군수품 계약업체</u>에 적용하며, 계약업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b>제 2 조(적용범위)</b> 이 규정은 <u>기품원의 군수품 품질경영 업무</u>에 적용한다.</p>	<p>- 적용범위 구체화 및 현실화 (업체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음)</p>
<p><b>제 4 조(기본방침)</b></p> <p>① (생략)</p> <p>② 정부품질보증은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수행하되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체제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실시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기품원은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품질보증형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의 범위 및 심도 등을 차등화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p> <p>⑦ (생략)</p> <p>⑧ 계약업체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계약품목의 생산 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조직, 절차, 설비, 검사/시험시설 등의 확보와 함께 자체 품질경영시스템 개선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품질보증 시 필요한 제반시설의 제공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⑨ ~ ⑪ (생략)</p>	<p><b>제 4 조(기본방침)</b></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정부품질보증은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수행하되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실시한다.</p> <p>③ ~ ⑤ (현행과 동일)</p> <p>⑥ 기품원은 계약업체의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품질보증형태, 품질경영체제 인증 여부, 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의 범위 및 심도 등을 차등화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p> <p>⑦ (생략)</p> <p>⑧ 계약업체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계약품목의 생산 및 품질보증에 필요한 조직, 절차, 설비, 검사/시험시설 등의 확보와 함께 자체 품질경영체제 개선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품질보증 시 필요한 제반시설의 제공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⑨ ~ ⑪ (원안과 동일)</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 5 조(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업무)</b></p>	<p><b>제 5 조(품질경영 담당직원의 업무)</b></p>	

현행	개정(안)	비고
<p>①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수탁업무 및 지원업무(별표 제1-2호 참조)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28조에 따른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중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li> <li>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형상통제활동</li> <li><del>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del></li> <li><del>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운반 및 폐기에 대한 감독</del></li> <li><del>5.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8호에서 규정한 방산업체기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의 확인</del></li> <li>6.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7. 기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명시한 군수품 품질경영과 관련된 지원업무</li> </ol> <p>② (생략)</p>	<p>① 담당직원은 <b>군수품 품질과 관련하여</b>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 제28조에 따른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중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 발급</li> <li>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형상통제활동</li> </ol> </li> <li>2. 지원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나. 기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에서 명시한 <b>군수품 품질관리와</b> 관련된 지원업무</li> </ol> </li> </ol> <p>②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분야 한정 (품질관련사항)</li> <li>- 구성변경 (방위사업청 위탁에 의한 기본업무와 지원업무로 구분)</li> <li>- 이 규정의 범위인 품질사항만 명시 (명확화)</li> <li>- 구성변경 (방위사업청 위탁에 의한 기본업무와 지원업무로 구분)</li> <li>- 규정 및 용어 변경사항반영 (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li> </ul>
제 6 조(보안)	제 6 조(보안)	

현행	개정(안)	비고
<p>군수품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보안은 「<u>군사</u>보안업무훈령」과 「<u>방위산업</u>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p>	<p>군수품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보안은 「<u>국방</u>보안업무훈령」과 「<u>방위산업</u>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p>	<p>-훈령명 변경 사항 반영</p>
<p><b>제 7 조(품질보증형태 분류)</b></p> <p>①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u>방위사업관리규정 제 635조</u>에 따라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p> <p>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p> <p>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p> <p>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 임의인증 품목</p> <p>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p> <p>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 (추가)</p> <p><del>마. 구조나 기능이 단순한 품목</del></p> <p><del>바. 사용용도가 민수품과 유사한 품질이 안정된 품목</del></p> <p>2. 선택품질보증형(II형) : 국방 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u>안정되어 계약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품목</u></p> <p>3. ~ 4. (생략)</p> <p>② 제1항의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해 규정한 품목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b>제 7 조(품질보증형태 분류)</b></p> <p>①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보증형태는 <u>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0조</u>에 따라 국내 계약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p> <p>1. 단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품목</p> <p>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강제인증 품목</p> <p>나. 한국산업표준(KS)등 법정 임의인증 품목</p> <p>다.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품목</p> <p>라. 대량자동화 전문생산품목 <b>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된 품목</b></p> <p>&lt;삭 제&gt;</p> <p>2. 선택품질보증형(II형) : 국방 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생산품 중 품질이 <b>안정된 품목</b></p> <p>3. ~ 4. (현행과 동일)</p> <p>② 제1항의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해 규정한 품목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 방위사업청 규정 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p>-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p>-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상용품목 시장에서 일반대중 또는 업계에 상당량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정규 생산품으로서 <u>카다로그</u>, 산업체 설계도 또는 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용품목으로 분류한다.</p> <p>2. ~ 5. (생략)</p>	<p>1. 상용품목 시장에서 일반대중 또는 업계에 상당량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정규 생산품으로서 <u>카탈로그</u>, 산업체 설계도 또는 규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용품목으로 분류한다.</p> <p>2. ~ 5. (현행과 동일)</p>	<p>- 오기수정</p>
<p><b>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b></p> <p>① <u>제7조의 품목특성에 따라 분류된 품질보증형태(I형, III형, IV형)는</u>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p> <p>1. ~ 3. (생략)</p> <p>② <u>선택품질보증형(II형)은 III형, IV형 품목 중 계약업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도양산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u></p> <p><del>1. 국방품질경영체제를 인증받은 계약업체의 인증품목 중 품질이 안정된 품목</del></p> <p>2. ~ 3. (생략)</p> <p>③ (생략) &lt;신설&gt;</p> <p>④ (생략)</p> <p>⑤ (생략)</p>	<p><b>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b></p> <p>① <u>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보증형태(I형, III형, IV형) 검토 의뢰를 받으면</u>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p> <p>1. ~ 3. (현행과 동일)</p> <p>② <u>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는 III형, IV형 품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품질보증형(II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양산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u></p> <p>&lt;삭제&gt;</p> <p>1. ~ 2.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u>센터는 단순품질보증형(I형) 품목 중 동일한 품목이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품질경영부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동일)</p> <p>⑥ (현행과 동일)</p>	<p>-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p>- 문구 명확화 (전제조건 사항인증 명확화)</p> <p>- 용어변경사항 반영</p> <p>- 명확화 (전제 조건으로 항목에서 제외 필요)</p> <p>-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p>- 조항추가에 따른 조항 번호 수정</p>
<p><b>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b></p> <p>① 품질경영부는 매년(추가) 「군</p>	<p><b>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b></p> <p>① 품질경영부는 매년 <u>주요 군수</u></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p> <p>②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에는 주요 군수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경영수준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p> <p>&lt;신 설&gt;</p>	<p>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센터에 수준조사 수행을 요청한다.</p> <p>②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계획」에는 조사대상 군수업체, 조사항목과 방법, 분석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센터는 담당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수준조사를 수행하며, 품질경영부는 이 결과를 종합한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p>	<p>- 조사대상 방법 절차 및 업무 분장 명확화를 위해 조항 재구성</p>
<p><b>제10조(군수품 품질보증기본계획(안) 작성)</b></p> <p>① 품질경영부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3년 주기로 「군수품 <u>품질보증</u>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p> <p>② 「군수품 <u>품질보증</u> 기본계획(안)」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수품 <u>품질보증</u> 및 방산물자 <u>품질경영</u>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추가)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u>군수품 품질보증</u>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4.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li> </ol> <p>&lt;신 설&gt;</p>	<p><b>제10조(군수품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작성)</b></p> <p>① 품질경영부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5년 주기로 「군수품 <u>품질관리</u>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p> <p>② 「군수품 <u>품질관리</u> 기본계획(안)」은 방위사업청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수품 <u>품질관리</u>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u>품질경영인증체제</u> 등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방위사업 <u>품질</u>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4. 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li> <li>5. <u>국제품질보증 활용</u> 등 군수</li> </ol>	<p>-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p>-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방위사업 품질 관리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5. 그 밖에 청장이 <u>군수품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 품질경영</u>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품 수입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청장이 군수품 <u>품질관리</u>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12조(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b></p> <p>①(추가) 군수품 <u>품질경영</u>과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p> <p>② 품질경영부는 매년 수행하는 군수품 <u>품질경영</u> 선진화 정책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관리한다.</p>	<p><b>제12조(군수품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 연구)</b></p> <p>① <u>각 부서</u>는 군수품 <u>품질관리</u>와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p> <p>② 품질경영부는 매년 수행하는 군수품 <u>품질관리</u> 선진화 정책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관리한다.</p>	<p>-용어조정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용어 적용)</p> <p>- 수행주체 명시</p> <p>-용어조정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용어 적용)</p>
<p><b>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b></p> <p>① 계약업체는~~~이행하여야 한다.</p> <p>1. 단순품질보증형(I형)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업체는(추가)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 또는 해당 센터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2. 선택품질보증형(II형) 계약업체는 선택품질보증형</p>	<p><b>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b></p> <p>① 계약업체는~~~이행하여야 한다.</p> <p>1. 단순품질보증형(I형)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계약업체는 <u>규격에 따라</u>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구시 또는 해당 센터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장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2. 선택품질보증형(II형) 계약업체는 선택품질보증형</p>	<p>- 자체 품질보증 기준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 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국방 품질 경영 체제 (K D S 0050-9000) 실행 조건표(별표 제3-1호)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 품질보증형(Ⅳ형)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 국방 품질 경영 체제 (K D S 0050-9000) 실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계약업체는 ~~~~ 제출 시 <u>기</u> <u>품원의 품질경영문서체계를 통하여</u>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할 수 있다.</p> <p>1. (생략)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전용장비 소프트웨어 포함) ·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p>	<p>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해당 품목 품질보증형태별로 국방 품질 경영 체제 (K D S 0050-9000) 실행 조건표(별표 제3-1호)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각 센터에 품질보증 입증서류(품질보증서,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 품질보증형(Ⅳ형)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 국방 품질 경영 체제 (K D S 0050-9000) 실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계약업체는 ~~~~ 제출 시 <u>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통하여</u>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할 수 있다.</p> <p>1. (현행과 동일)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 계약품목에 대한 주요 제조시설 /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전용장비 소프트웨어 포함) · 계약품목에 대한 소프트</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통일</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3조)</p>

현행	개정(안)	비고
<p>웨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 인력현황</li> </ul> <p>&lt;신설&gt;</p> <p>3. 품질경영시스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계약품목에 대한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등 포함)</li> </ul> <p>4. (생략)</p>	<p>웨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 인력현황</li> <li>· 위조부품 방지방안</li> </ul> <p>3. 품질경영체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문서 (계약품목에 대한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등 포함)</li> </ul> <p>4. (현행과 동일)</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16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b></p> <p>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p> <p>6. ~ 8. (생략)</p>	<p><b>제16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b></p> <p>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p> <p>1. ~ 4. (현행과 동일)</p> <p>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p> <p>6. ~ 8. (현행과 동일)</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b></p> <p>각 센터는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p> <p>&lt;신설&gt;</p>	<p><b>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b></p> <p>각 센터는 다음과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p> <p>1. 양산계획 검토</p> <p>가. 센터장은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에서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 수립 지원 요청 시 담당(부서)을 지정한다.</p> <p>나. 담당(부서)은 체계개발단계 품질관리 지원 결과 및 품질통제점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양산계</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0조)</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lt;신 설&gt;</p>	<p>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 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하여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p> <p>다. 담당(부서)은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 필요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기획부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다.</p> <p>라. 유도무기의 경우 품질인증사격시험 필요성, 시기, 수량, 방법 및 세부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p> <p>마. 담당(부서)은 양산계획서 또는 후속함 건조계획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협정 적용여부 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으로 통보한다.</p> <p>2. 계약요구조건 검토</p> <p>센터장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전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이 오면 다음사항을 검토 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 (제37조)</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1조)</p>

현행	개정(안)	비고
<p>1. 계약문서 접수 가. (생략) 나. 계약서 접수 후 팀장은 담당직원을 정하고, 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 품질보증을 준비한다. (1) 계약문서 검토 (2) 계약업체 최초방문(신규계약업체, 신규품목 또는 초도양산품 계약업체) (3) ~ (5) (생략) 다. (생략)</p> <p>2. (생략)</p> <p>3.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가. 담당직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초도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실적업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1) ~ (10) (생략) 나. ~ 다. (생략)</p>	<p>청에 제출한다. 가. 규격의 요구조건 나. 최초생산품 시험 필요여부와 방법 다. 주요 수입대상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필요사항 라. 기타 계약특수조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p> <p>3. 계약문서 접수 가. (현행과 동일) 나. 계약서 접수 후 팀장은 담당직원을 정하고, 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부 품질보증을 준비한다. (1) 계약문서 검토 (2) 계약업체 최초방문(최초양산품, 신규계약 및 신규품목 생산 업체는 필수) (3) ~ (5)(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p> <p>4. (현행과 동일)</p> <p>5. 정부품질보증 준비 협의 가. 담당직원은 계약문서를 검토한 후 신규품목(최초양산품 포함) 계약업체 또는 신규계약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하며, 기존 실적업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동일) 나. ~ 다. (현행과 동일)</p>	<p>- 조항신설에 따른 번호조정</p> <p>- 내용 명확화</p> <p>- 조항신설에 따른 번호조정</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1조)</p>
<p>제18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① ~ ③ (생략)</p>	<p>제18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① ~ ③ (현행과 동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④ 업체품보계획서는 계약 후 생산 전에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토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품보계획서 검토가 지연 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업체 통보한다. 단, 동일업체와 계속 계약되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 중 변동 사항만 추가로 받는다.</p>	<p>④ 업체품보계획서는 계약 후 생산 전에 제출받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 수정된 업체품보계획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b>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적절</b>한지 검토 후 결과(승인, 보완요구 등)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품보계획서 검토가 지연 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사전에 그 사유와 검토완료예정일을 계약업체 통보한다. 단, 동일업체와 계속 계약되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사항 중 변동 사항만 추가로 받는다.</p>	<p>- 검토 및 승인 대상 구체화 (군수품조달관리 규정 제98조)</p>
<p><b>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b></p> <p>① 위험식별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수행에 있어 위험 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분하여 식별한다.</p> <p>②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문서</li> <li>2. 연구개발자료</li> <li>3. 기술자료묶음</li> <li>4. 업체품보계획서</li> <li>5.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및 이행자료</li> <li>6. 과거 계약이행 정보</li> <li>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li> <li>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li> </ol>	<p><b>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b></p> <p>① 위험식별은 계약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수행에 있어 위험 관련 품질자료를 수집하여 위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으로 계약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 불만 및 피드백 정보로 구분하여 식별한다.</p> <p>②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문서</li> <li>2. 연구개발자료</li> <li>3. 기술자료묶음</li> <li>4. 업체품보계획서</li> <li>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li> <li>6. 과거 계약이행 정보</li> <li>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li> <li>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li> </ol>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 9. 기타 필요한 자료 ③ ~ ⑥ (생략) ⑦ 담당직원은----- 따른 처리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며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 한다. 2. (생략) ⑧ ~ ⑩ (생략)</p>	<p>9. 제9조의 품질수준조사결과 10. 기타 필요한 자료 ③ ~ ⑥ (현행과 동일) ⑦ 담당직원은----- 따른 처리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며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 한다. 2. (현행과 동일) ⑧ ~ ⑩ (현행과 동일)</p>	<p>- 위험평가 내실화 - 조항번호 조정  -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담당직원은 계약품목의 “위험 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시스템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이 포함되며, 위험도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del>단, 품질보증형태 Ⅲ형은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와 프로세스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del> ②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품보계획서를 센터장(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센터장(팀장)은 필요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u>계약내용 및 정부품질보증</u></p>	<p>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담당직원은 계약품목의 “위험 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을 수립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이 포함되며, 위험도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b>확인 범위와</b> 심도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품보계획서를 센터장(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센터장(팀장)은 필요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표지</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  - 문구보완 (품질보증범위 조절 가능 과 생략 사항이 상충됨)  - 오류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승인(정부품보계획서 표지)</p> <p>2. (생략)</p> <p>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p> <p>가.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p> <p>나. ~ 다. (생략)</p> <p>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 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u>수정 시행할 수 있으며, 수정되는 정부품보계획서의 내용은 사전에 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2. (현행과 동일)</p> <p>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p> <p>가. 품질경영체제 평가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p> <p>나. ~ 다. (현행과 동일)</p> <p>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 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b>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b></p> <p>④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제 15조제1호의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을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p> <p>⑤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적용 할 수 있다.</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통일 (약어사용배제)</p> <p>- 문구 명확화</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4조)</p> <p>- 계약관리본부 요청사항 반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정부품보계획 수립 절차 간략화 요청)</p>
<p><b>제21조(품질경영시스템 평가)</b></p> <p>① 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건표(별표 제3-1호)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시스템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p> <p>② 담당직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p>	<p><b>제21조(품질경영체제 평가)</b></p> <p>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건표(별표 제3-1호)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시스템과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p> <p>② 담당직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질경영시스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p> <p>③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의 세부 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시스템 요소를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수행내용 및 결과는 <u>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u>에 기록한다.</p> <p>④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는 인증심사 시 평가한 내용을 참고하여 취약한 요소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다.</p> <p>⑤ 품질경영시스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시스템 수립(평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업체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계획을 접수하며, 업체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시까지는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강화토록 한다.</p>	<p>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p> <p>③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 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시스템 요소를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4조 제5항의 방법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수행내용 및 결과는 <u>국방품질종합정보체제의 "정부품질보증일지"</u>에 기록한다.</p> <p>④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는 인증심사 결과 취약요소(부적합, 관찰사항)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한다.</p> <p>⑤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품질보증 중 계약업체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수립 계획을 접수하며,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시까지는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강화토록 한다.</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통일</p> <p>- 인증심사실적을 고려 취약요소 확인 (중복업무방지)</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22조(프로세스 검토)</b></p> <p>① (생략)</p> <p>②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u>품질보</u></p>	<p><b>제22조(프로세스 검토)</b></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u>국방</u></p>	<p>- 용어통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중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p> <p>③ (생략)</p>	<p>품질종합정보체계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b>제23조(제품확인감사)</b></p> <p>① ~ ② (생략)</p> <p>③ 계약업체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합격품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확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 2. (생략)</p> <p>3. <u>초도양산품</u></p> <p>가. 초도양산은 개발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초도양산 품질보증은 개발결과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질의 양산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p> <p>나. 개발 후 최초로 양산계약 체결 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협조한다.</p> <p>(1) <del>초도양산 품질보증 관련 계약특수조건</del></p> <p>(2) ~ (3) (생략)</p> <p>다. (생략)</p> <p>라.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초도양산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p> <p>(1) ~ (6) (생략)</p> <p>마. (생략)</p>	<p><b>제23조(제품확인감사)</b></p> <p>① ~ ② (현행과 동일)</p> <p>③ 계약업체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합격품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확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p> <p>1. ~ 2. (현행과 동일)</p> <p>3. <u>최초양산품</u></p> <p>가. 최초양산은 개발이후 최초로 양산 계약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양산 품질보증은 개발결과 완성된 규격에 따라 개발품질의 양산실현 가능성과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p> <p>나. 개발 후 최초로 양산계약 체결 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기술요구조건 설정을 위하여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협조한다.</p> <p>(1) &lt;삭 제&gt;</p> <p>(2) ~ (3) (현행과 동일)</p> <p>다. (현행과 동일)</p> <p>라.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최초양산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p> <p>(1) ~ (6) (현행과 동일)</p> <p>마. (현행과 동일)</p>	<p>- 용어변경사항 반영 (방위사업 관리 규정)</p> <p>- 제17조제1,2호로 이동</p> <p>- 용어변경사항 반영 (방위사업 관리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4. 양산제품</p> <p>가. (생략)</p> <p>나. 담당직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활동 수행 후 신속히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del>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정부품질보증일지에 정부품질보증 결과 기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품질증빙자료에 기록유지할 수 있다.</del></p> <p>다. ~ 사. (생략)</p>	<p>4. 양산제품</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담당직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활동수행 후 신속히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p> <p>다. ~ 사. (현행과 동일)</p>	<p>-감사결과 반영</p>
<p><b>제24조(시정조치)</b></p> <p>① ~ ④ (생략)</p> <p>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적용하며, 시정조치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p> <p>1. 제 1 방법 (생략)</p> <p>2. 제 2 방법 현장에서는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팀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에 시정사항을 요구한다.</p>	<p><b>제24조(시정조치)</b></p> <p>① ~ ④ (생략)</p> <p>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적용하며, 시정조치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p> <p>1. 제 1 방법 (생략)</p> <p>2. 제 2 방법 현장에서는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팀장은 문서로 계약업체에 시정사항을 요구한다.</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가. (생략)</p> <p>나. 계약업체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p> <p>다. ~ 라. (생략)</p> <p>3. ~ 4. (생략)</p>	<p>가. (생략)</p> <p>나. 계약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p> <p>다. ~ 라. (생략)</p> <p>3. ~ 4. (생략)</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25조(규격불일치품)</b></p> <p>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 불일치품 생산 (추가)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b>제25조(규격불일치품)</b></p> <p>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 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동일)</p> <p>⑥ 계약업체는 위조부품을 식별할 경우 즉시 담당직원에게 발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류하여 생산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은 품질경영부장에게 발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센터장은 규격불일치 사항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현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6조)</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6조)</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40조)</p>
<p><b>제28조(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b></p> <p>① 정부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b>제28조(정부 품질 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b></p> <p>① 정부 품질보증활동(제품확인 검사 등)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동일)</p>	<p>- 명확화 (제품확인 검사 등 기품원이 수행하는 품질 보증활동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됨을 명확하게 표현)</p>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b></p> <p>① 계약업체는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동일)</p> <p><b>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b></p> <p>① 계약업체는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33조(위험추적 및 피드백)</b></p> <p>① (생략)</p> <p>②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주요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와 추가적으로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 수시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33조(위험추적 및 피드백)</b></p> <p>① (생략)</p> <p>②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주요 품질경영체제 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와 추가적으로 위험이 식별된 경우에 수시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34조(품질정보관리)</b></p> <p>①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수집된 (추가) 품질정보를 향후 정부품질보증과 품질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생산 및 사후봉사과정에서 획득한 품질정보를 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34조(품질정보관리)</b></p> <p>① 센터는 정부품질보증 과정에서 수집된 위조부품 현황 등 다양한 품질정보를 향후 정부품질보증과 품질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생산 및 사후봉사과정에서 획득한 품질정보를 센터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신설 내용 반영 (제36조)</p>
<p><b>제3절 구매품 정부품질보증</b></p>	<p><b>제3절 구매계약 정부품질보증</b></p>	<p>-용어명확화 (구매사업과 구분)</p>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39조(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b>            ① ~ ② (생략)            ③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등을 생략하고, 제품확인감사는 완성품의 성능 및 기능 위주로 실시하되, 품질이 입증된 제조업체의 품질 증빙자료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b>제39조(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b>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등을 생략하고, 제품확인감사는 완성품의 성능 및 기능 위주로 실시하되, 품질이 입증된 제조업체의 품질 증빙자료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b>            ① 센터는 불합리한 규격의 도출과 개선, 품질 시스템 평가를 통한 업체 경영체제 또는 공정개선, 업체 애로사항 해소, 부품 및 소재류에 대한 품질신뢰도 검증을 위해 현장품질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생략)</p>	<p><b>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b>            ① 센터는 불합리한 규격의 도출과 개선,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통한 업체 경영체제 또는 공정개선, 업체 애로사항 해소, 부품 및 소재류에 대한 품질신뢰도 검증을 위해 현장품질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생략)</p>	<p>- 용어보완 (방위사업법의 용어 적용)</p>
<p><b>제42조(품질개선)</b>            ① ~ ⑤ (생략)            &lt;신설&gt;</p>	<p><b>제42조(품질개선)</b>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품질경영부는 연간 단위로 품질개선결과를 종합하여 1월말 까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제출한다.</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제10조)</p>
<p><b>제43조(연구개발단계 참여 및 지원)</b>            ① ~ ② (생략)            ③ 센터는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 개발완료 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에서 이관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1. ~ 6. (생략)</p>	<p><b>제43조(연구개발단계 참여 및 지원)</b>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센터는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 개발완료 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에서 이관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동일)</p>	<p>- 방위사업관리 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p>
<p><b>제45조(대상품목)</b>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대상품목은</p>	<p><b>제45조(대상품목)</b>            수출품 정부품질보증 대상품목은</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lt;신설&gt;</p>	<p>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동일)</p> <p>3. 국과연 또는 원 시험시설에서 시험이 필요한 수출용 화약류</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개정 내용 반영 (제81조)</p>
<p><b>제47조(품질보증 용역비)</b></p> <p>① 품질보증 용역비(이하 "용역비"라 한다)는 당해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기품원에 품질보증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부담하며, 용역비의 산출은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따른다.</p>	<p><b>제47조(품질보증 용역비)</b></p> <p>① 품질보증 용역비(이하 "용역비"라 한다)는 당해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기품원에 품질보증용역 의뢰자가 부담하며, 용역비의 비목은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특성상 금액으로 용역비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p> <p>1. 직접인건비는 수출품 품질 관리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p> <p>가.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충당금, 기품원에서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p> <p>나.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기간 동안 다른 업무(양산품 품질보증, 다른</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내용 반영 (제83조)</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내용 반영 (제83조)</p>

현 행	개 정(안)	비 고
<p>② ~ ③ (생략) &lt;신 설&gt;</p>	<p>수출품 품질관리활동 등)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는다.</p> <p>다. 공무원으로서 보수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급받는 자의 인건비는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는다.</p> <p>2. 직접경비는 해당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해당 용역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써 여비 및 통신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비, 시험검사비, 모형제작비, 자문 및 용역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한다.</p> <p>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경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상한다.</p> <p>② ~ ③ (원안과 동일)</p> <p>④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p>	<p>- 방위사업 품질 관리규정 내용 반영 (제83조)</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9조(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지원) 각 부 및 센터는 중앙조달품목의 정부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다. 제49조(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지원) 각 부 및 센터는 중앙조달품목의 정부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에 따라 품질정보 및 원가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 규정변경 사항 반영</p>
<p>【별표 제1-1호】 용어 정의 용어 정의 &lt;신 설&gt;</p> <p>8. 기술자료묶음 (TDP : Technical Data Package)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도면·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품질보증요구서(QAR)·BOM 목록·상호운용성 프로파일 등 포함 <del>※ 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del></p> <p>16. 생산준비검토(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p>	<p>【별표 제1-1호】 용어 정의 용어 정의</p> <p>6. 국방규격(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 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p> <p>9. 기술자료묶음 (TDP : Technical Data Package)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도면·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품질보증요구서(QAR)·BOM 목록·상호운용성 프로파일 등 포함</p> <p>17. 생산준비검토(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p> <p>- 항목추가에 따른 번호변경</p> <p>- 국방규격으로 이동</p> <p>- 항목추가에 따른 번호변경</p>

현행	개정(안)	비고
<p>양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u>초도양산</u> 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확인하는 것 &lt;신설&gt;</p> <p><b>33. 초도양산</b>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수량 중 최초로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p> <p><b>34. 최초생산품</b> <u>최초생산품은 최초 정립된 업체 품보계획에 따라 생산된 소량의 제품이 계약 품질요구조건에 일치 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품질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것</u></p> <p><b>35. 품질(Quality)</b> 대상(제품, 서비스 등)의 고유 특성(물리적, 기능적, 관능적 특성 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p> <p><b>37. 품질경영(QM : Quality Management)</b> <u>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으로서 품질기획, 품질보증, 품질관리 및 품질개선 등 포함</u></p> <p><b>38. 품질경영시스템 평가(Quality Management System Assessment)</b></p>	<p>양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u>최초양산</u> 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확인하는 것</p> <p><b>27. 위조부품</b> 원제작사 또는 공인된 제작사의 정품처럼 보이게 만든 무단 복제, 모조, 개조 또는 불법으로 제조된 자재, 부품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p> <p><b>35. 최초양산</b>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수량 중 최초로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p> <p><b>36. 최초생산품</b>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연구개발 후 또는 기술협력 계약 후 <u>최초양산 대상 물량, 업체가 신규로 계약하여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u>을 말한다.</p> <p><b>37. 품질(Quality)</b> <u>군수품의 고유 특성(물리적, 기능적, 관능적 특성 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u></p> <p><b>39. 품질경영(QM : Quality Management)</b> <u>개발 및 생산자가 품질과 관련된 방침과 목표의 수립하고, 품질의 기획, 보증과 개선을 통하여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활동</u>을 말한다.</p> <p><b>40. 품질경영체제 평가(Quality Management System Assessment)</b></p>	<p>- 용어변경사항 반영</p> <p>- 항목신설</p> <p>- 용어변경사항 반영</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p> <p>- 방위사업법의 용어적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계약업체가 해당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을 적절히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는 정부품질보증의 한 활동</p> <p><b>39. 품질관리(QC : Quality Control)</b>  <u>품질요구사항이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계약업체가 해당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을 적절히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있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는 정부품질보증의 한 활동</p> <p><b>41. 품질관리</b>  군수품이 요구하는 품질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제반 관리활동으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 등을 포함한다.</p> <p><b>44. 품질인증사격시험</b>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최초양산 중인 유도무기의 품질을 납품 전에 확인, 개선·보완하기 위해 최초양산된 물량의 일부를 실사격하는 것을 말한다.</p> <p><b>50. 하자처리</b>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총칭</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p> <p>- 항목신설</p> <p>-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내용 반영</p>
<p><b>【별표 제1-2호】</b> 수탁업무·지원업무 및 관련 조항  <u>수탁업무 및 관련조항</u></p>	<p><b>【별표 제1-2호】</b> 수탁업무·지원업무 및 관련 조항  <u>수탁업무 및 관련조항</u></p>	<p>- 규정 조항제목 변경 사항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  제15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제16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  제18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  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제21조(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제22조(프로세스 검토)  제23조(제품확인감사)  제24조(시정조치)  제25조(규격불일치품)  제26조(형상통제)  제27조(외부기관 시험의뢰)  제28조(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  제31조(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 및 검사조서 발급)  제32조(품질문서 관리)  제33조(위험추적 및 피드백)  제35조(하도급품)  제36조(선납후검)  제39조(구매계약 품목 품질보증)  제8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p>	<p>제14조(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  제15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제16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제17조(정부품질보증 준비)  제18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  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제21조(품질경영체제 평가)  제22조(프로세스 검토)  제23조(제품확인감사)  제24조(시정조치)  제25조(규격불일치품)  제26조(형상통제)  제27조(외부기관 시험의뢰)  제28조(정부 품질 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  제31조(정부품질보증결과 보고 및 검사조서 발급)  제32조(품질문서 관리)  제33조(위험추적 및 피드백)  제35조(하도급품)  제36조(선납후검)  제39조(구매계약 품목 품질보증)  제8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p>	<p>- 관련 규정 변경 및 개정내용 반영</p>																																				
<h3 style="text-align: center;">지원업무 및 관련 조항</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업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조사</li> <li>○ 군수품의 품질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li> <li>○ 군수품에 대한 품질조사서 작성</li> <li>○ 군수품의 품질보증기본계획(안) 수립</li> <li>○ 계약품목의 품질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li> <li>○ 기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명시한 군수품 품질경영과 관련된 지원업무</li> </ul>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td rowspan="14" style="vertical-align: middle;">관련 조항</td><td>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td></tr> <tr><td>제8조(품질보증형태의 검토)</td></tr> <tr><td>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td></tr> <tr><td>제10조(군수품 품질보증계획 수립)</td></tr> <tr><td>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td></tr> <tr><td>제12조(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td></tr> <tr><td>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td></tr> <tr><td>제34조(품질정보관리)</td></tr> <tr><td>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td></tr> <tr><td>제40조(품질기동지원활동)</td></tr> <tr><td>제41조(품질지도활동)</td></tr> <tr><td>제42조(품질개선)</td></tr> <tr><td>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td></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조사</li> <li>○ 군수품의 품질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li> <li>○ 군수품에 대한 품질조사서 작성</li> <li>○ 군수품의 품질보증기본계획(안) 수립</li> <li>○ 계약품목의 품질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li> <li>○ 기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명시한 군수품 품질경영과 관련된 지원업무</li> </ul>	관련 조항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제8조(품질보증형태의 검토)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제10조(군수품 품질보증계획 수립)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제12조(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	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	제34조(품질정보관리)	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	제40조(품질기동지원활동)	제41조(품질지도활동)	제42조(품질개선)	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	<h3 style="text-align: center;">지원업무 및 관련 조항</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지원업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조사</li> <li>○ 군수품의 품질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li> <li>○ 군수품에 대한 품질조사서 작성</li> <li>○ 군수품의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수립</li> <li>○ 계약품목의 품질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li> <li>○ 기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에서 명시한 방위사업 품질관리와 관련된 지원업무</li> </ul>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td rowspan="14" style="vertical-align: middle;">관련 조항</td><td>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td></tr> <tr><td>제8조(품질보증형태의 검토)</td></tr> <tr><td>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td></tr> <tr><td>제10조(군수품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작성)</td></tr> <tr><td>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td></tr> <tr><td>제12조(군수품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 연구)</td></tr> <tr><td>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td></tr> <tr><td>제34조(품질정보관리)</td></tr> <tr><td>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td></tr> <tr><td>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td></tr> <tr><td>제41조(품질지도활동)</td></tr> <tr><td>제42조(품질개선)</td></tr> <tr><td>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td></tr> </tbody> </table>	구분	내 용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조사</li> <li>○ 군수품의 품질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li> <li>○ 군수품에 대한 품질조사서 작성</li> <li>○ 군수품의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수립</li> <li>○ 계약품목의 품질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li> <li>○ 기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에서 명시한 방위사업 품질관리와 관련된 지원업무</li> </ul>	관련 조항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제8조(품질보증형태의 검토)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제10조(군수품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작성)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제12조(군수품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 연구)	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	제34조(품질정보관리)	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	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	제41조(품질지도활동)	제42조(품질개선)	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	<p>- 조항제목 변경 사항반영</p>
구분	내 용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조사</li> <li>○ 군수품의 품질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li> <li>○ 군수품에 대한 품질조사서 작성</li> <li>○ 군수품의 품질보증기본계획(안) 수립</li> <li>○ 계약품목의 품질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li> <li>○ 기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명시한 군수품 품질경영과 관련된 지원업무</li> </ul>																																					
관련 조항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제8조(품질보증형태의 검토)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제10조(군수품 품질보증계획 수립)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제12조(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																																					
	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																																					
	제34조(품질정보관리)																																					
	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																																					
	제40조(품질기동지원활동)																																					
	제41조(품질지도활동)																																					
	제42조(품질개선)																																					
	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																																					
	구분	내 용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불만사항 처리 등 대군지원 활동</li> <li>○ 군수품 생산업체의 품질수준 조사</li> <li>○ 군수품의 품질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li> <li>○ 군수품에 대한 품질조사서 작성</li> <li>○ 군수품의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수립</li> <li>○ 계약품목의 품질정보 수집을 통한 품질개선 활동</li> <li>○ 기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에서 명시한 방위사업 품질관리와 관련된 지원업무</li> </ul>																																					
관련 조항	제7조(품질보증형태 분류)																																					
	제8조(품질보증형태의 검토)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제10조(군수품 품질관리기본계획(안) 작성)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제12조(군수품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 연구)																																					
	제30조(납품지체(예상) 통보)																																					
	제34조(품질정보관리)																																					
	제37조(대외 품질보증 용역업무)																																					
	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																																					
	제41조(품질지도활동)																																					
	제42조(품질개선)																																					
	제6장 품질경영 등의 지원																																					

현행	개정(안)	비고																												
<p><b>【별표 제34호】 샘플링 수행 기준</b></p> <p style="text-align: center;"><b>샘플링 수행 기준</b></p> <p><input type="checkbox"/> 샘플링 계획</p> <p>1. ~ 4. (생략)</p> <p>&lt;추가&gt;</p>	<p><b>【별표 제34호】 샘플링 수행 기준</b></p> <p style="text-align: center;"><b>샘플링 수행 기준</b></p> <p><input type="checkbox"/> 샘플링 계획</p> <p>1. ~ 4. (생략)</p> <p>5. 위의 샘플링계획과 KS 등 다른 표준의 샘플링 기준 혼합사용 금지 (예 KS 적용 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시료 수 선정 등)</p> <p>6. 규격 또는 계약에서 정한 AQL이 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격 또는 계약기준을 참고하여 샘플링 계획 수립</p>																													
<p><b>【별지 제3-1호 서식】 위험 식별 및 처리방안</b></p> <p style="text-align: center;"><b>위험 식별 및 처리 방안</b></p> <table border="1" data-bbox="135 929 662 1276"> <thead> <tr> <th>재고번호 (품명)</th> <th>구분①</th> <th>위험식별내용②</th> <th>위험등급③</th> <th>위험처리방안④</th> </tr> </thead> <tbody> <tr> <td></td> <td rowspan="2">품질경영 시스템 운영</td> <td></td> <td>저 (P, I)</td> <td></td> </tr> <tr> <td></td> <td></td> <td>중 (P, I)</td> <td></td> </tr> </tbody> </table>	재고번호 (품명)	구분①	위험식별내용②	위험등급③	위험처리방안④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		저 (P, I)				중 (P, I)		<p><b>【별지 제3-1호 서식】 위험 식별 및 처리방안</b></p> <p style="text-align: center;"><b>위험 식별 및 처리 방안</b></p> <table border="1" data-bbox="694 929 1212 1276"> <thead> <tr> <th>재고번호 (품명)</th> <th>구분①</th> <th>위험식별내용②</th> <th>위험등급③</th> <th>위험처리방안④</th> </tr> </thead> <tbody> <tr> <td></td> <td rowspan="2">품질경영 체제 운영</td> <td></td> <td>저 (P, I)</td> <td></td> </tr> <tr> <td></td> <td></td> <td>중 (P, I)</td> <td></td> </tr> </tbody> </table>	재고번호 (품명)	구분①	위험식별내용②	위험등급③	위험처리방안④		품질경영 체제 운영		저 (P, I)				중 (P, I)		<p>- 방위사업법의 용어적용</p>
재고번호 (품명)	구분①	위험식별내용②	위험등급③	위험처리방안④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		저 (P, I)																											
			중 (P, I)																											
재고번호 (품명)	구분①	위험식별내용②	위험등급③	위험처리방안④																										
	품질경영 체제 운영		저 (P, I)																											
			중 (P, I)																											
<p><b>【작성요령】</b></p> <p>① 란은 위험식별 대상으로 계약 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과거 계약이행 정보, 고객불만 및 피드백정보,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란은 위험처리 방안을 품질 시스템평가, 프로세스검토, 제품확인감사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확인할 내용 및 관련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p> <p>⑤, ⑥ 란은 <u>품보활동관리정보 체계에서</u>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시 작성되는 란으로 ⑤ 란은 ④란 위험처리 방안이 품질확인대상으로 전환된 동일한 내용임</p> <p>⑥ (생략)</p>	<p><b>【작성요령】</b></p> <p>① 란은 위험식별 대상으로 계약 정보, 제품 및 프로세스 특성, 품질경영체제 운영, 과거 계약 이행 정보, 고객불만 및 피드백정보, 기타로 구분하여 기록한다.</p> <p>② ~ ③ (현행과 동일)</p> <p>④ 란은 위험처리 방안을 품질 체제평가, 프로세스검토, 제품확인감사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확인할 내용 및 관련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p> <p>⑤, ⑥ 란은 <u>국방품질종합정보 체계에서</u>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시 작성되는 란으로 ⑤ 란은 ④란 위험처리 방안이 품질확인대상으로 전환된 동일한 내용임</p> <p>⑥ (현행과 동일)</p>	<p>- 방위사업법의 용어적용</p> <p>- 용어통일</p>																												